

■ 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2. 7. 5.>

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(제3조제2항 관련)

(단위: m²)

학 교	학생수별 기준면적	
	120명 이하	121명 이상
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	1,500	1,350+0.5×총학생정원
중학교 과정 대안학교	2,000	2,025+0.5×총학생정원
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	2,000	2,325+0.5×총학생정원

비 고

1.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.
2. 수영장·체육관·강당·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 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.
3.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.